##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오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7

발의연월일: 2020. 6. 26.

발 의 자:조오섭·송갑석·문진석

이형석 • 노웅래 • 허 영

진성준 • 윤영덕 • 이용빈

주철현 · 신정훈 · 민형배

이병후 • 양기대 • 임호선

허종식 · 김회재 · 양향자

윤준병 의원(19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, 노약자·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의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및 노약자·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이 전반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입주민의 민원 에 의존하여 단편적으로 파악됨에 따라,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지원 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,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, 입 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3 신설).

##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의3(실태조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,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(이하 이 조에서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 -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있다.
  -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

설치·보수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 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- ⑤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그 권고에 따른 이행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- ⑥ 실태조사와 결과 공개의 방법·절차,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제5항에 따른 이행 계획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조의3(실태조사 등) ① 국토교
	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
	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
	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
	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
	시설물 노후화, 편의시설 설치
	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
	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
	이 조에서 "실태조사"라 한다)
	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
	<u>여야 한다.</u>
	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
	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
	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
	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·단
	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
	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
	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
	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
	요청에 따라야 한다.
	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
	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

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설치·보수 및 기능 향 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사업주체에게 시 설물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⑤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그 권고에 따 른 이행 계획을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실태조사와 결과 공개의 방법·절차,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제5항에 따른 이행 계획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